

탈북자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종합형 사례관리 모형의 제시와 그 실천*

엄명용*

본 연구는 지역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중심이 되어 운영할 수 있는 탈북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적 사례관리 서비스 모형을 제시한 후 그 것을 탈북자를 대상으로 실천해 보면서 향후 탈북자를 위한 서비스의 모형 수립과 관련한 사항을 제안하였다. 그 과정을 세별하면, 첫째, 프로그램을 통해 주로 개입해야할 사회·심리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자가 11명의 탈북자에 대한 비구조화된 개별 면접을 총 20회 실시하였다. 둘째, 탈북자와의 면접과 문헌연구를 통해 확인된 문제들을 소개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성 요소를 치료적 측면과 사례관리 서비스적 측면에서 나누어 탐색하였다. 셋째, 탈북자의 사회적응 및 심리적 안정과 자립 정착 지원을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종합적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넷째, 제시된 프로그램을 탈북자 대상으로 적용 실천해 보았다. 프로그램 실천 대상자는 일차적으로 면접한 탈북자 중 사회·심리적 부적응 현상을 보임과 동시에 복합적 생계 문제를 표출시켜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사람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천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향후 보완책, 그리고 제안점들을 제시하였다.

I. 문제 제기

1. 배경

- 1994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국내 거주 탈북자의 수가 98년 말 현재 740여명에 이르고 있다. 1) 정부의 비공식 정보에 의하면, 이미 북한을 벗어나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주민의 수도 중국의 등록 3성을 중심으로 2,700여명 정도가 있고 이들 중 350여명이 국내 입국 의사를 밝히고

* 이 논문은 성균관대학교의 1997년도 성균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1) 연도별 입국현황을 보면, '90년 9명; '91년 9명; '92년 8명; '93년 8명; '94년 52명; '95년 40명; '96년 56명; '97년 86명; '98년 7월 현재까지 39명이었다(통일부 인도지원국, 1998).

있으며, 러시아에 체류중인 건설 및 벌목공 출신 탈북주민 300여명 중 소수가 입국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남한내 입국에는 당사국과의 외교적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는 있으나, “북한 이탈주민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에 입각, 전원 수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통일원, 1997). 따라서, 북한의 경제 사정이 나아지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탈북주민의 국내 정착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남한 사회에 정착한 탈북자들에게는 정부의 정착금 지원, 주거지원 보조 등 경제적 보조가 주어진다. 이러한 물질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한 많은 탈북자들이 생계의 곤란과 남한 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조선일보, 1998. 11. 28). 심각한 것은 북한 내에서의 탈북자 계층 빈부 격차가 남한에까지 이어지는 등 영세민 탈북자들의 생계 및 사회적응 문제가 북에서 남으로 영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조선일보, 1998. 10.19).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외로움, 죄책감, 불안감, 소외감, 실망감 등의 심리적 고통도 수반되고 있다(전우택 외, 1996: 30-33). 최근에는 탈북자들이 ‘자유북한인 협회’를 결성하여 그들의 심리적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고 탈북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을 벌이기로 한바 있다(연합뉴스, 1998.12.11). 향후 경제, 사회·심리적인 면에서 적절한 개입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은 채 탈북자가 계속 증가할 경우 탈북자들의 이러한 빈곤 및 사회·심리적 갈등 현상은 사회적 불안요소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다 심각한 사회 문제의 예방을 위하여 통일 후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탈북자의 남한 내 사회적응 및 정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탈북자의 남한 사회 적응 및 정착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크게 보아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심리적 부적응이다(윤병익, 1997: 30). 경제적 안정과 사회·심리적 안정은 상호 의존적이겠지만 경제적 문제 해결이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은 자명하다. 하지만, 통일 독일의 경우에서 보더라도 경제적 적응이 반드시 사회적 적응을 의미하지는 않았다(신율, 1997: 231). 취업 후에도 사회적 적응에 실패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우리 사회에서도 발생하고 있음이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남한 정착 문제는 주거지나 직장을 알선해 주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 내적 상처에 대한 치유와 진정한 한국사람으로서의 용납이 우선되는 사회·심리적 적응 지원의 중요성이 탈북자 자신들에 의해 피력된 바 있다(김명세, 1996: 102-103). 독일의 경험에서도 통일 이후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가 바로 동서독 주민간 사회적 괴리감 및 심리적 이질감의 극복이었다(박영호, 1994: 95). 북한 이탈주민의 남한 정착은 무엇보다 이러한 사회·심리적 안정 회복을 토대로 하는 만큼 이러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이 향후 북한 이탈주민 정책 실천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즉,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 우선해서, 다른 프로그램 시행과 동시에, 또는 다른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사회적응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체계적이고 적절한 사회 적응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량 탈북 및 이주 사태가 일어날 경우를 가정한다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은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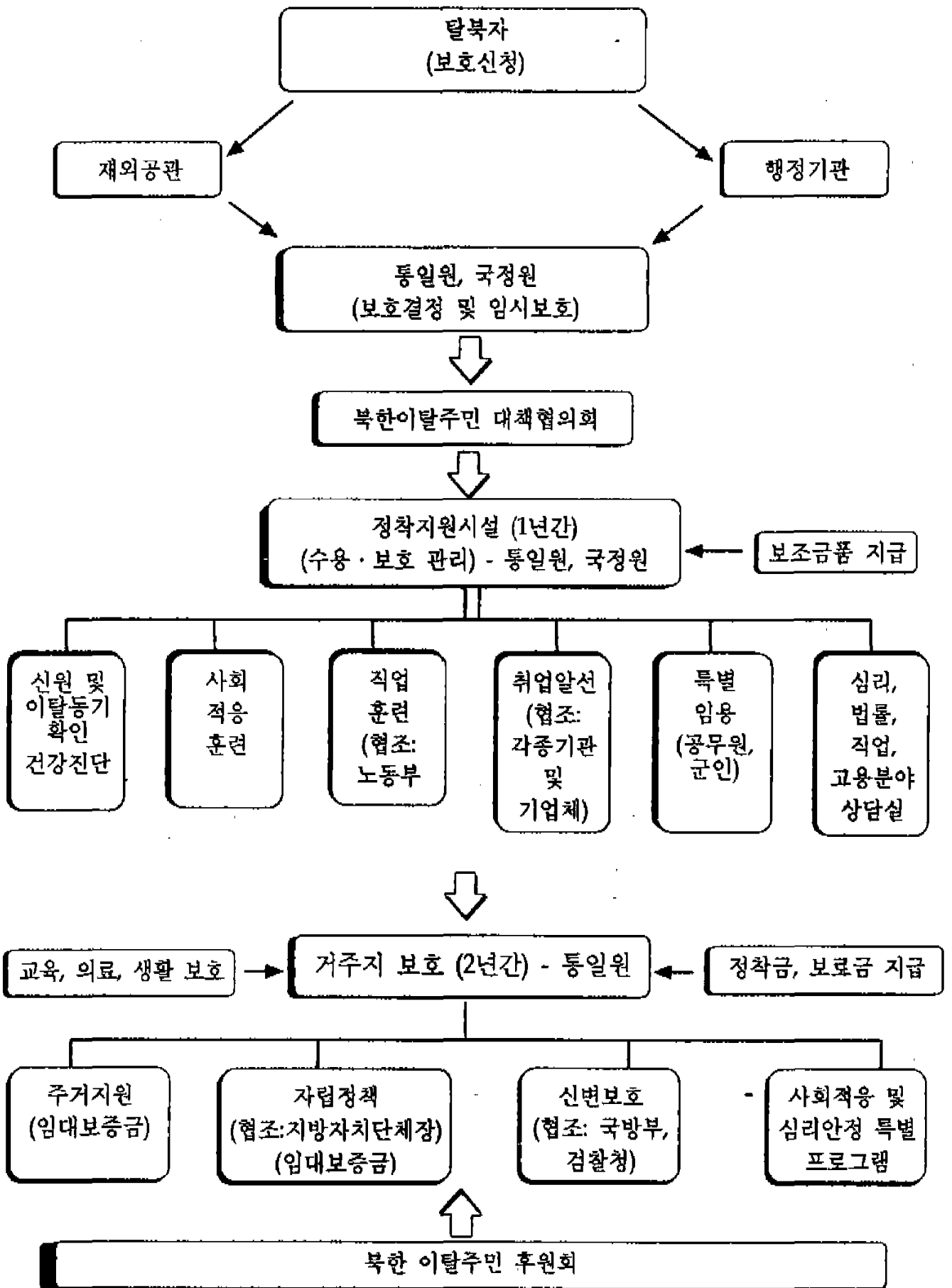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에 대한 종합 장기 대책의 골격을 제시하는 법률인,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착지원법”)이 1997년 1월 13일 제정되어 동년 7월 14일 발효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정착지원법은 포괄적, 체계적인 면에서 이전의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이종훈, 1996: 8), 여전히 물질적 지원에 치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착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정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법 제10조, 제11조 1항); 2) 북한 이탈주민 대책 협의회 설치(법 제6조); 3) 북한이탈주민 후원회의 설치 및 법인화(법 제30조) 4) 통일원 장관 주도의 사회적응 교육(법 제15조), 직업 훈련의 실시(법 제16조) 및 취업알선(제 17조); 5) 주거지원 실시 및 정착금 및 보노금 지급(법 제20조 및 제21조), 6) 교육지원(법 제24조), 의료보호(법 제25조), 생활보호(법 제26조), 7)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위임(법 제22조 제2항 및 제31조) 등이다. 이 법은 통일원 장관 주도의 사회적응 교육을 내포함으로써 탈북자의 사회적응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회적응 지원에 실효가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다.

2. 사회적응 관련 프로그램 현황

1) 정착지원법 체계 내의 현황

탈북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정착지원법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응 관련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정착지원법이 제시하고 있는 주요 사항들을 참고하여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단계별 지원 체계를 도표화하여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이 도표에 나타난 여러 가지 보호 및 적응 지원 서비스들의 문제점들을 모두 살펴보는 것은 본 논문의 범위 밖이다. 여기서는 전반적인 서비스들의 맥락 속에서 이 연구의 주요 대상인 사회·심리적 적응 대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단 보호결정이 내려진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 보호는 새 법에 의해 현재 건설중인 정착지원 시설에서 시작된다. 보호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이 정착지원 시설에서 1년간, 그리고 거주지에 전입하여 2년간 정부의 보호,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회·심리적 적응 지원 프로그램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사회적응 훈련과 심리, 법률, 직업, 고용분야에 대한 상담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정착지원 시설에 머무는 1년동안 내에만 실시되게 되어있다(법률 제30조 1항). 다만, 거주지 보호기간중 보호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나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상태가 지극히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그림 1> 탈북자 단계별 보호 지원 체계

마련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게 되어있다 (법률 제30조 3항). 여기서의 사회적응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인 보호대상자가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기본 교육을 의미한다 (법률 제30조 2항). 다시 말해, 개별적 욕구나 심리상태, 사회적 적응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적응 지원 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통합적이고 포괄적, 집단적인 일반 교육을 내포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실시돼 71명의 탈북자들이 이미 교육을 마쳤으며 현재는 한달 동안 실생활중심의 기본교육과 각종 기관에서 마련하는 특별 교육프로그램, 민간 기업체의 직장 적응 교육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거보호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사회적응 특별 프로그램은 어느 곳에서 누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 불확실한 상태이다.

이러한 사실은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심리적 적응 문제를 위한 대책은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심리적 통합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까닭에 1개월이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훈련만으로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단기적 일회성 교육만으로 탈북자들이 겪고 있는 각종 심리적 어려움들(정체성에 대한 혼란, 불안감, 남한 주민들의 냉정함, 무관심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을 인지하고 개입하기에는 무리이다 (신을, 1977: 222-223). 따라서, 교육이 아닌 상담 위주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프로그램 실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착지원 시설에서는 물론이고 거주지 보호기간, 그리고 보호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계속해서 실시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적 프로그램의 실천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2년간의 거주지 보호 기간 중에 실시되는 사회·심리 적응 프로그램을 각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²⁾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고 보호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거주지 소재 지역 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북한 이탈주민 담당 사회복지사가 계속 이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³⁾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적절한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기 지역 내에서 북한 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한민족 통일에 매우 긴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지역 사회복지관, 민간단체, 그리고 종교기관들과 연계하여 보다 적극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집단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는 각기 다른 탈북자 개인의 심리적 안정 상태, 사회 부적응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지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제31조에는 통일원 장관은 거주지에서의 보호업무를 보호대상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되어있다.

3) 보호 및 정착지원법 시행령 제49조는 통일원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과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과 기타 거주지에서의 자립·정착에 관련된 사항 등의 거주지보호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게 되어있다.

원을 제공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갖고 있는 보호자들에게는 상하고 불안한 마음에 대한 개별적 어루만짐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경험한 집단생활과 유사한 남한에서의 집단 활동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특히 그러한 집단활동이 의무적이거나 반강제적인 경우 더욱 거부감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전우택 외, 1996: 53). 따라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또는 전문가의 권유에 따른 본인의 동의로 참여하는 개별적 실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 인간의 초유의 존엄성과 가치 및 개성의 존중, 자율권의 존중, 수용의 자세 등의 전문적 가치를 지니고 감정 이입적 대화 기법으로 개별화된 조언, 상담,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사회복지사가 동원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심리적 부적응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물질적 여건들과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즉, 직업과 주거가 안정되면서 사회·심리적인 안정 및 적응이 따를 수도 있고, 반대로 사회·심리적인 안정이 있어야 안정된 직업과 주거가 유지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의사 결정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때, 직업, 주거, 사회·심리적 안정 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 이탈자들의 전반적 적응 지원은 그들의 욕구와 그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각종 사회의 가용 자원을 종합적, 효율적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때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이탈주민과 공식적 지역사회의 기관 및 비공식적 원조관계 망에서 가용될 수 있는 필요한 서비스와 원조를 연계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례관리자로서의 사회복지사의 활동이 필요하다. 인간 존중의 전문적 가치를 갖고 개별적 상담 및 치료를 담당함과 동시에 탈북자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각종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결을 도모하는 종합적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탈북자들의 자활의지와 자활능력을 동시에 키워줄 수 있을 것이다.

2) 개발된 기존 사회 적응 지원 프로그램

탈북자의 남한 사회적응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노출되면서 그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다. 지금까지 일정한 형태를 갖춘 프로그램으로는 이장호(1997)의 프로그램과 이만식(1996)의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장호(1997)가 제시한 「북한출신 주민 심리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상담 전문가 및 훈련된 교육 전문가의 지도 하에 운용되는 반구조화된 집단지도 모형으로서 중단기적 재사회화 경험의 촉진과 심리적 적응 상담(집단훈련) 등을 위한 4단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⁴⁾ 프로그램의 실시는 일주일에 1회(3시간)씩 하며, 기본과정 총 10주(30시간)에 총 2회(6시간)의 추수과정이 있어 기본과정과 추수과

4) 도입과정; 용해-조정과정; 정리-통합과정; 적응-종결과정 등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후속과정(추수 심화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정을 연속적으로 실시할 경우 총 12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의 시설 보호 기간에만 실시가 가능한 한계점을 갖고 있다고 본다.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탈북자 집단을 대상으로 특정 기간 동안 실험적인 상담지도 활동을 하려다 탈북자에 대한 집단적 접촉이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상” 불가능하여 좌절되었고, 개발된 프로그램 검증 작업에도 탈북자 집단을 포함시키려다 같은 이유로 검증 과정을 포기한 것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한 집단 상담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혹 가능하더라도 1회, 많아야 2회 정도일 것이다. 탈북자들이 일단 각자의 거주지로 이전한 후에는 집단을 형성하기가 불가능하고 더욱이 12주 내지 16주의 장기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당국의 보호 기간 중에 실시될 수 있다 하더라도 각자의 거주지에 정착한 후의 사회적응상 문제에 대한 연속적인 개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심리 사회적 적응과 불가분의 상호 관련을 맺고 있는 지역사회내 생활 자원들과의 연결 활동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즉, 심리적 측면에 치우친 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너무 길고 복잡하여 지역사회에서 탈북자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반 사회복지사나 전문 요원이 쉽고 간단하게 진행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만식(1996: 11-37)은 탈북자를 위한 적응 프로그램을 3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즉, 1) 탈북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문화를 익히게 하는 문화습득 훈련 프로그램, 2) 탈북자들을 보호·관리하는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고안된 직업훈련 프로그램, 3) 보호·관리가 끝나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해 갈 때 탈북자들에게 직접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시키는 간접서비스도 실시하는 사례관리 프로그램 등이다. 문화습득 훈련은 남한 사회에 관한 정보나 사실을 제공하는 인식훈련, 남한 사회에 적절한 행동을 일깨워 주는 행동조절, 실제 경험을 분석하고 다시 연습해 보는 경험훈련, 남한 사회 속에서의 경험을 집단 토의식으로 점검해 보는 문화적 자아인식, 행동의 원인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귀인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탈북자의 직업교육을 준비시키고 취업시키기 위해 필요한 업무 사항들을 소개하였다. 사례관리 프로그램에서는 사례관리의 개념, 기본 목적, 기능, 과정 등을 소개하였다. 아쉬운 점은 각 프로그램들이 평면적으로 서술되어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들이 하나의 짜여진 프로그램 속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각 프로그램들을 누가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각종 심리·사회적 문제를 표출할 수 있는 탈북자에 대한 초기의 상담·치료 개입 부분에 대한 세부 사항이 부각되어 있지 않다.

지금까지 제시된 탈북자의 사회적 적응 지원을 위한 두 가지 모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이장호(1997)의 모델은 비교적 구조화되어 있어 실시가 용이하지만, 탈북자들이 주거지로 이주한 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가 힘든 점과 상담 외에 생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연계 활동이 빠져있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이만식(1996)의 모델은 탈북자들의 보호·관리 기간은 물론 탈북자가 거주지에 이주한 후에도 실시할 수 있다는 점과 탈북자의 욕구를 연계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지역사회에서의 노력을 고려한 포괄성이 인정되지만 프로그램 실시 방법이 구조화되어 있지 않아 그대로 실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II. 연구 목적 및 방법

1. 목적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지역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사회적응과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의 실시를 주장하였다(이금순, 1997: 76-77; 이금순·송정호, 1997: 92-93; 이만식, 1996: 17-23; 이종훈, 1996: 20-21). 하지만,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정형화된 실천 모델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북한 이탈주민들의 사회적 적응과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관을 이용한 사회복지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 지역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도 구체적인 실천 내용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 연구들에서 제안되고 시도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지역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중심이 되어 운영할 수 있는 탈북자의 사회 적응을 위한 종합적 사례관리 서비스 모형을 제시하고 검증함에 있다. 종합적 사례관리 서비스 모형이란 통상적 사례관리 기능에 전문적 상담·치료기능을 접합하여 사례관리자가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를 사정하는 과정에서 긴급한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속해서 사례관리 서비스를 실천하는 모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초점은 치료부분을 강조하면서 사례관리 속에 치료의 부분을 통합한 종합적 사례관리 모형을 제시하고 그 것을 탈북자를 대상으로 실천해 본 후 문제점을 찾아내 향후 탈북자를 위한 서비스의 모형 수립과 관련한 사항을 제안함에 있다.

2. 방법

첫째, 프로그램을 통해 주로 개입해야할 사회·심리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자가 탈북자에 대한 비구조화된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고 광범위한 문헌연구를 통해 면접 내용을 보충하였다. 탈북자와의 면접을 위해서는 관계 당국에 협조를 구했으며 당국의 주선 하에 거주지 담당 경찰관의 안내를 받아 연구자의 연구실 또는 탈북자의 거주지에서 평균 2시간

가량(최소 90분에서 최대 180분)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대상 탈북자는 정착지원법이 실시된 이후(1997. 7. 14) 남한에 이주하여 당국의 보호 기간을 지나 각자의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였다. 연령, 성별, 나이, 북에서의 직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고루 분포되게 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는 탈북자 20여명을 면접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총 11명만(총 20회) 면접할 수 있었다.

둘째, 탈북자와의 면접과 문헌연구를 통해 확인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성 요소를 치료적 측면과 사례관리 서비스적 측면에서 나누어 탐색하였다. 셋째, 탈북자의 사회적 적응 및 심리적 안정과 자립 정착 지원을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넷째, 제시된 프로그램을 탈북자 대상으로 적용 실천해 보았다. 프로그램 실천 대상자는 일차적으로 면접한 탈북자 중 사회·심리적 부적응 현상을 보임과 동시에 복합적 생계 문제를 표출시켜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사람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천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향후 보완책, 그리고 제안점들을 제시하였다.

III. 프로그램 개발의 준거

1. 사회적응상 문제

탈북자의 사회·심리적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탈북자의 현재 적응 특성 및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탐색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확인된 문제 현상에 근거한 프로그램이라야 프로그램 실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적응상의 문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경제적인 문제와 사회·심리적인 문제와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먼저 사회·심리적 측면에서의 탈북자의 적응 특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경제적인 특성 및 상황을 살펴보겠다.

1) 탈북자의 사회·심리적 특성

탈북자와의 면접을 통해 그들이 겪고 있는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탈북자들의 말을 문자 그대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가능한 그들의 표현을 살리면서 정리하였다.

(1) 개인주의적이며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남한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없다. 남한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있을 때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매우 냉정하다. 친해지

려고 노력해도 외면한다. 친해지지 않으면 외로움, 심적 고통 등을 토로할 수 없는데 친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더욱 그런 것 같다. 귀순자들도 안 만난다. 어차피 남한 사람이 될 것이면 북한 사람끼리 만나는 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북에 있는 가족과 친지, 친구들이 그림자다. (외로움, 고독감) - 사회연계체계의 빈약.

(2) 탈출하는 과정의 어려운 경험들이 가끔 불안과 공포를 가져온다. 함께 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해 죄의식을 느낀다. 오는 도중 넘겨야 했던 죽음의 고비들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3) 남한 사람들에 대해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느낀다. 윗사람, 친구, 부모, 사회, 국가 등에 대한 존중이 없어 보이며 단합이 안되는 것 같다. 예절이 없고 질서와 도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놀랐다. 정신적으로 나약하다(부도난 가정의 자살, 따돌림당하고 좌절하는 경우 등). 낭비가 심하다. (이질감, 거부감) - 가치관, 개인주의적인 생활 양식에 대한 혼란, 가치체계의 혼란.

(4) 보호 경관이 구직을 위해 필요한 모든 기관들을 접촉하고 다니는 것이 무리이다. 문제가 있어도 경관과 상의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문제 처리도 경관의 단독 의견에 의해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경찰만 활동하는 것 같다. 공직자들 통장, 동장, 통일부, 구의원 등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어디에도 믿고 의지할 데가 없다. (문제를 의논할 사람의 부족) - 전문 상담자의 부족.

(5) 남한 사람들이 탈북자에 대해 무관심하다. 처음에는 호기심의 대상으로 접근하다 답을 얻고 나면 관심이 없어지고 외면한다. 똑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대해주지 않는다. 따뜻하게 정을 주지 않는다. 인간에 대한 관심은 없고 권위, 위신만 높이려고 한다. (거부당하는 느낌) - 탈북자의 부적응을 탈북자의 탓으로만 돌리는 한국인의 인식.

(6) 남한 사람들이 탈북자들을 한심하게 보는 것 같다. 북한 말을 흉내내면서 놀린다. 못사는 곳에서 와서 남한 것을 파먹는다고 생각한다. 촌뜨기로 여기며 깔본다. 말로는 동정하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못살고 가난한 데서 온 천한 사람, 수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우월 의식을 갖고 있는 듯이 보인다. 북에는 생활도 문화도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르다. 멸시의 눈초리를 보내며 무시하고 차별한다. 통일 후에도 이렇게 무시당하면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인생 설계를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남한에 온 것을 후회함). 북한에서 왔는데 그저 그저(대충) 살지, 뭘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탈북자를 김정 일자와 똑같이 취급한다. 그럴 땐 악이 솟아난다. (무시당하는 느낌)

(7) 언어 소통상 문제가 있다(사투리, 어투, 한자, 영어 등). 두음법칙이 지켜지지 않아 답답하다. 외래어 간판에 거부감을 느낀다.

(8) 자아 정체성 문제. 아직 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그저 조선인이라는 생각이 든다. 남한 사회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답답하다. -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

(9) 감시의 정도가 너무 심해 답답함을 느낀다. 감시는 규정에 의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적용

에 도움이 되도록 보호해주었으면 좋겠다. 담당자와는 문제가 없으나 제장, 서장, 과장 등과 충돌한다. 경찰이 억압적이고 감시가 너무 심하다. 경찰의 임무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10) 영구 임대 아파트(11평 - 20평)에 거주하게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온 사람들을 천시하고 무시하는 일이다. 25평이상 적어도 30평 정도의 아파트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한이 이렇게 잘 살고 사치하고 있는데 얼마 안되는 우리가 살 집도 마련할 수 없나? (남한 사회에 대한 잘못된 기대) - 남한 사회에 대한 지식과 이해 부족.

(11) 결혼문제. 남한 여자들은 결혼 조건으로 돈을 많이 요구한다고 들었다.

(12) 민간의 지원(예: 교회)은 부담이 간다. 정부가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탈북자의 사회·심리적 문제들은 지금까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한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거의 차이가 없다.⁵⁾ 탈북자들, 특히 북한에 가족을 두고 단독 이탈하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극심한 불안, 외로움, 죄의식, 스트레스, 그리고 좌절감을 경험하고 있다. 평소 생활하던 문화권과는 전혀 생소한 문화권에서의 생활은 근본적인 불안을 야기하기 마련인데, 탈북자들은 이전 사회에서 소유하고 있던 가정, 이웃, 친구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지지망 또는 사회 관계망과 완전 분리된 채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하기 때문에 더욱 불안하고 외롭다. 또한, 탈북 과정에서 겪은 생명의 위협, 함께 오지 못한 친지들, 자신의 행위로 인해 남은 가족이 당할지 모를 불이익 등에 대한 생각들로 죄의식을 동반한 심리적 외상(trauma)을 경험하고 있다.

반면, 탈북자들은 남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들로서는 용납 할 수 없는 가치 체계와 행동 양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어려운 감정과 속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사람을 사귀지 못한다. 이것은 고독감을 증가시키고 결국 모든 것을 혼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심리적 중압감과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으로 연결된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 남한 사람들의 거부적 태도와 무시, 경멸적 언행이다. 더욱이 이전 사회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되던 탈북자들의 어투가 그들에 대한 남한인의 무시와 차별의 단초가 될 때 그들의 자아 정체성은 위협을 받는다. 보호 경관들의 지나친 감시는 손상된 자아 정체감의 손상 정도를 더욱 깊게 한다. 남한 사회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상황 판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탈북자들은 사회에 대한 잘못된 기대나 생각을 표출하기도 한다. 교회 등 종교 기관을 통해 물질적, 정신적 도움을 받고는 있으나 부담스러워한다.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 지원은 국가로부터 와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가 적절한 도움없이 오랫동안 방치될 때 탈북자들은 자신들의 내적 자원의 고갈을 경험하게 되고 일부는 범죄에 빠져들기도 한다. 이것은 다시 주변 사람들의 곱지

5) 탈북자들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전우택, 민성길(1996: 16-60)을 참고할 것. 저자들은 탈북자 21명을 총 48회에 걸쳐 면담한 결과를 정리 제시하였다.

않은 시선을 부르고 그러한 무시와 경멸의 분위기는 탈북자들의 사회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북한에서보다 남한에서 더 심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한 탈북자가 66.7%였다는 오혜정(1995: 73)의 연구가 이들의 사회심리적 부적응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2) 경제 생활 상황

면접 대상자들을 통해 파악한 탈북자의 경제 생활은 매우 열악하였다. 무직으로서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1명, 70세), 현재 교육생으로서 월 4만 8천원의 용돈만을 받고 있는 사람(2명),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일당 22,000원에서 25,000원 사이의 소득이 있는 사람(2명) 등은 생계가 막연한 상태였고 교회의 사무원(1명), 아파트 경비(1명), 일부 탈북자가 경영하는 식당 종업원(2명), 전자회사 생산직(1명) 등은 40만원에서 80만원 정도의 소득을 나타냈다. 이는 휴전 이후 귀순해서 남한에 살고 있는 북한동포 5백61명(95년말 현재)을 대상으로한 조사에서 조사대상 절반 정도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으나 나머지 2백53명은 막노동과 같은 안정되지 못한 직업이나 무직 상태로서 월 평균 수입 40-80만원으로 최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전 조사 내용과 일치되는 현상이다(동아일보, 1996. 2.7). 또한 현재 남한 내 거주 741명의 탈북자 중 약 40%가량이 실직자라는 최근의 내용과 일치한다(KBS 2, 1999. 1.28). 하지만, 최근의 국정감사자료의 내용으로 보도된 것(조선일보, 1998. 10. 19)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1998년 7월부터 두달간 실시된 168 가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탈북자의 평균수입은 70만원, 평균주택 규모는 20평으로 나타났다. 이중 월평균 180만원을 넘는 가구가 12가구, 40평이상의 주택 소유가구는 3가구였다. 본 연구에서는 면접 대상 선정시 경제적으로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하는 자는 포함시키지 않은 점⁶⁾과 이들의 한국내 정착 기간이 짧음을 고려한다면 조사 결과의 차이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것이다. 한편, 윤덕룡 외(1997: 24)는 경제 문제로 고통받는 탈북자들이 많으며, 실업자의 비율이 높고 점점 더 악화되는 추세이며, 탈북자들의 경제적 기반은 94년의 「귀순 북한동포 보호법」이 발효되어 정착금 및 보로금의 금액이 낮아진 이후 결정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최근의 탈북자의 경제 생활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들이 나타내고 있는 경제 관련 욕구를 요약하면, (1) 북에서의 자격 및 경력을 인정한 직업 교육 및 선택, (2) 직업 선택과정에서의 상담 서비스, (3) 자기 적성에 맞는 직장의 알선, (4)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정부의 재정적 지원(정착 및 주거 지원)⁷⁾, (5) 정보화 등 북에서 접하지 못

6) 경제적으로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는 탈북자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
7) “아기가 나자마자 걸으라고 하면 걸을 수 있나?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또는 걸을 수 있도록은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걸음마도 못하는 아이와 다 큰 어른이 어떻게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란 말인가? 정부가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는 상태에서 통일되면 북에서 온 사람들은 모두 머슴살이나 할 것 같다.” (탈북자와의 면담에서 40대의 탈북자가 한말)

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접근 용이한 기회의 마련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경제 생활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심리적 상태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북한 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탈북자들이 신속히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자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취업알선, 주거지원 등의 물질적 서비스와 동시에 지속적으로 실시할 심리·정서적 안정, 긍정적 인식체계 형성 등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2. 프로그램의 필요 구성 요소 및 실천 양식

1) 구성요소

탈북자의 사회·심리적 적응이란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이념, 규범, 가치체계, 문화양식 등을 수용하면서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심리적으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안정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한다(이금순 외, 1997: 74). 이것은 자신의 변화와 자신을 감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 모두를 요구한다. 따라서, 탈북자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은 탈북자 자신, 탈북자를 대하는 남한 국민, 탈북자 및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남한 정부의 복지정책, 민간기관들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연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앞에서 면접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탈북자의 사회·심리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 등을 바탕으로 하여 프로그램이 포함해야할 구성요소를 정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탈북자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요소

탈북자들을 존엄성을 지닌 하나의 인간으로 수용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감정들에 감정이입적 반응을 보이면서 그들의 문제에 개별적 경청이 가능한 개별 사회사업적 요소가 필요하다.

(2) 자아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

자아정체성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다. 외부 환경에 비쳐진 자신의 모습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과 타인에 의해 자신에 전달되는 자신의 모습과의 차이가 클 때 심리적·부적응 상태에 빠지게 마련이다. 자아정체성은 또한 자신의 모습과 관련하여 외부 환경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낯선 문화권에 진입한 탈북자들에게는 이러한 영향이 크게 작용하리라 본다. 따라서, 탈북자의 초기 적응시 교류를 하는 남한 사람들의 태도, 그러한 태도를 해석하는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다.

(3) 탈북자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나 기대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요소

탈북자들은 북한에서의 가치체계 및 인식체계와 남한 사회의 가치 및 인식 체계 사이에 갈등

하고 있다. 동독 탈출자의 경우 동독에서 갖고 온 사고 체계 또는 인식 체계가 단순한 “교육”을 통해 쉽게 바뀌어질 수 없었고, 변하지 않은 사고체계와 인식체계로 인하여 동독 탈출 주민들은 사회적 소외를 느꼈다고 한다(신율, 1997: 231-232). 변하지 않는 사고·인식 체계는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응상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대한 올바르게 인식하고 생각할 수 있는 체계를 습득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다.

(4) 남한 사람들이 탈북자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 무시, 배타적 태도에 개입할 수 있는 요소.

탈북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시각과 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많은 연구를 통해 지적된 바 있다(신율, 1997: 235-236; 윤병익, 1997: 31; 이금순, 1997: 75-77). 탈북주민들의 사회·심리적 어려움은 상당부분 우리사회의 탈북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 무시, 배타적 태도에 의해 가중된다. 이것은 서독의 경우와 대비되는 현상이다. 서독인은 한국인에 비해 비교적 편견이 적었던 결과, 동독 탈출인의 70%가 스스로 일년내에 직장을 구할 수 있었다(신율, 1997: 235-236). 한국에서는 이러한 편견이 탈북자의 경제활동에도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탈북자에 대한 우리사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이금순, 1997: 74-75). 특히, 탈북자가 생존활동을 위해 상호 교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개입이 시급하다.

(5)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촉매가 될 수 있는 요소.

우호적인 사회적 관계망의 소유 여부는 탈북자의 사회적응의 성패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 면접 탈북자 가족 중, 교회 내에 사회적 지지망을 갖고 있는 경우 모든 면에서 적응 상태가 좋았다. 독일의 경우에서도 동독을 탈출한 자들 중 친척 혹은 가족을 서독에 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비교할 때, 그렇지 못한 경우의 서구사회 적응이 훨씬 어려웠다(신율, 1997: 226). 하지만, 탈북자들이 스스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기는 매우 어렵다. 앞서, 교회 내의 사회적 지지망도 탈북자 자신 또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형성했다기보다는 미국에 거주 중인 가족이 한국에 있는 아는 목사를 통해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해 놓은 경우였다. 서독 정부의 경우 서독에 친·인척 관계가 전혀 없는 동독 탈출자들의 사회 적응을 위해 기존의 복지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노력을 보였다(신율, 1997: 226). 탈북자들의 경우 한국 내에 가족이나 친척을 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탈북자를 위해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해 줄 수 있는 요소가 프로그램 활동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6) 생활에 필요한 각종 자원들을 발굴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요소.

국가가 개인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공급하는 사회주의 체제에 익숙한 탈북자들은 스스로 각종 복지 자원을 찾아 나선다는 것에 익숙해 있지 않다. 더욱이, 정착 초반기의 지원을 제외하고는 지원과 보호가 전무한 실정인 우리 나라의 경우 주어진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 개발, 연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은 책임 있는 전문가에 의해

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탈북자들이 사회에 정착, 사회적으로 적응하여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관련된 현재의 서비스들을 살펴보면, 정착금의 지급,⁸⁾ 주거 지원,⁹⁾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¹⁰⁾ 공공 근로사업,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생활보호, 교육지원, 의료보호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 복지관에서의 각종 무료 교육의 알선, 종교 단체를 비롯한 민간 단체 자원의 서비스들의 발굴, 개발 및 연결, 결혼 상담 등이 민간 수준의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7) 탈북자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는 기능.

탈북자들은 문화의 차이, 언어의 차이,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의 부족 등으로 부당하게 그들의 권리를 침해받을 소지가 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의 부당한 경험, 민원 창구에서의 부당한 대접, 보호 경관의 지나친 감시 및 간섭, 물건값의 파지불 등이 발생할 때 탈북자들을 위해 개입할 수 있는 요소가 프로그램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요약한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들을 정리하면, (1) 탈북자들의 사회·정서·심리적인 문제를 경청하고 사정, 진단하는 프로그램의 도입 부분, (2) 탈북자의 인식 체계나 주변 남한 사람들의 편견에 개입하여 변화를 시도하는 개별 사회사업적 치료부분, (3) 상담·치료 외에 탈북자가 생존 및 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의 각종 복지자원들을 발굴, 개발하여 탈북자들과 연결하는 일반 사례관리적 서비스 부분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2) 실천 양식

프로그램의 바람직한 실천양식으로서의 하나의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정형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실천 절차가 간단하고 명료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만이 실천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복지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밝혔듯이 거주지에서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 탈북자 집단을 형성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단 프로그램 형태보다는 개인적으로 접촉하여 개인의 독특한 상태를 배려 깊게 해결해 가는 개별 실천 모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리하면, 사회·심리적 적응 지원 프로그램은 지속적, 지역사회 중심적, 개별적인 서비스 형태로 다른 서비스들간의 종

8) "정착지원법"에 의해 종래 1인당 6백9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1999년부터는 2천6백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이전에 6백 90만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월30만원씩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음.

9) 현재 지방자치 단체에서 알선하고 있으며 임대애 필요한 보증금(종래 11평 기준 840만원에서 1999년부터 13평 기준 9백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종래에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이사가 불가능했으나 1999년부터는 이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10) 당국의 수용 보호 기간중 직업 훈련 분야를 선택하여 거주지 보호 기간중 시립기능대학 등에서 훈련을 받게 하고 있다. 하지만, 직업 훈련 분야를 선택하는 직업 진로 탐색과정이 너무 짧아 세심한 판단을 할 수 없고 판단에 대한 깊이 있는 상담도 부족한 실정이다.

합적 연계를 도모하면서 실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북한 이탈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겠는가이다. 남한 사람들도 개별 사회사업가가 담당하는 상담, 치료, 또는 종합적 생활 설계 등에 참여하기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 이탈주민은 전체주의적인 분위기에서 당이 그들이 소속된 집단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상황에서 생활하다 왔기 때문에 개인적 문제를 가지고 개별적 상담이나 치료에 응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심리 적응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립 생활 준비를 성실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자극 또는 보상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가능한 보상 형태로서 정착지원법 제30조 1항에서, “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북한이탈주민후원회¹¹⁾로부터 생활자금을 대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생활자금 대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심리 적응 프로그램을 담당한 사회사업가의 추천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담당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탈북자에 대한 후견인과 유사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프로그램 담당 사회복지사는 탈북자가 원할 때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주는 심리적 지지뿐만 아니라 탈북자의 생활 자립을 위한 지지 기반의 역할을 담당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IV. 프로그램의 제시 - 종합형 사례관리 모형

앞서 정리한 프로그램의 세 가지 구성 요소(도입 부분, 개별 치료 부분, 일반 사례관리적 서비스 제공 부분)를 포괄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실천 모형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이 종합형 사례관리 모형이다. 이 모형에 의한 실천에서는 초기 면접에서 탈북자의 문제에 가장 적합한 상담 및 치료가 제공되고 탈북자의 필요에 따라 일반적 사례관리로 이어지며, 필요한 경우 다시 상담·치료로 연결되는 순환적 상호 보충적 서비스가 실시된다. 일반적 사례관리 실천¹²⁾에서도 사례관리 담당자의 치료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볍게 취급되어 왔다

11) 금년 8월13일 공식 발족된 이 후원회에서는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을 위해 1997년 9월말부터 98년 1월까지의 종교계 등 단체회원을 중심으로 20억원, 98년 2월부터 99년 1월까지 국민모금식으로 50억원 등 총 70억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한바있다. 후원회는 통일원 등록 재단법인 산하에 사회적응, 취업, 결연 및 해외, 홍보 및 기금 등 4개분과위를 두고 있다. 현재 후원이 필요한 탈북자를 약200여명으로 보고 있다 (통일원 장관 인터뷰, KBS2 '추적 60분'에서).

12) 탈북자를 위한 일반 사례관리 기법의 유용성은 이미 이만식(1997)과 이금순(1997)에 의해서도 제기된바 있지만, 사례관리 모형 속에서 상담·치료적 개입이 부각되면서 당장 실천 가능한 형태인 절차화되고 구조화된 하나의 모형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Vourlekis, 1992: 8). 따라서, 문제 상황과 행동에 대한 치료를 강조하면서 일반적 사례관리의 핵심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형태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종합형 사례관리 방법이라 칭했다(황성철, 1995:286-287).

종합형 사례관리 모형 하에서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심층적 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클라이언트의 추가적인 욕구와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와의 연계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클라이언트를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고 따라서 보다 깊이 있는 관계 형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즉, 하나의 프로그램 틀 안에서 개별적 치료가 깊이 있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춰 여타 서비스들 간의 연계가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탈북자들의 사회 적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탈북자들이 갖고 있는 정서·심리적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입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자립 및 정착에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와의 연결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형태의 모델이 필요로 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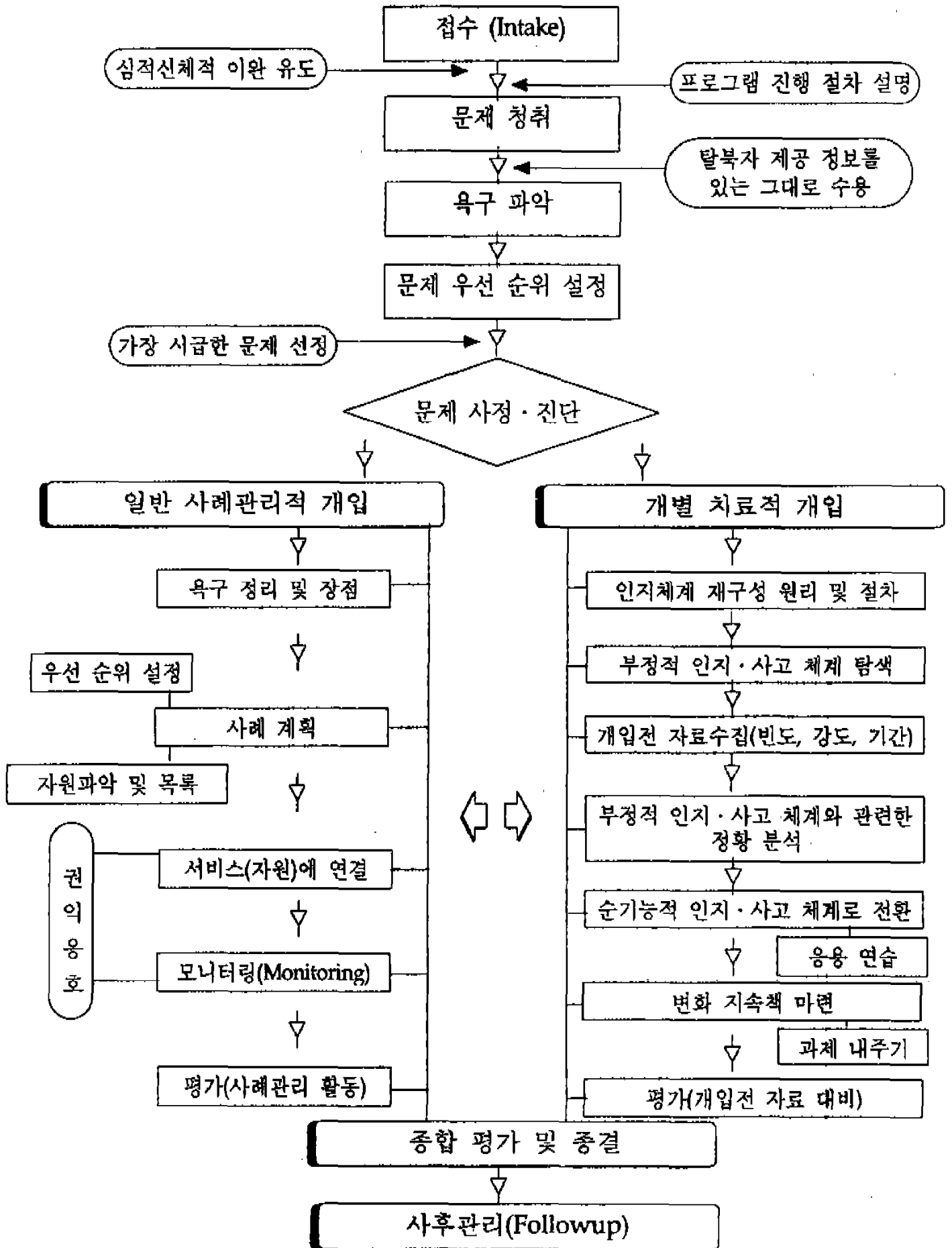
프로그램 실천 사회복지사와 탈북자 사이의 친화적 관계 형성 및 감정이입적 대화를 통해 탈북자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야 탈북자들이 사례관리 계획 및 검토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다. 그러한 동참 과정이 있을 때 자아 존중감이 향상될 수 있으며, 나아가 주변의 자원들을 최대한 발굴하고 활용하여 자신의 잠재력량을 극대화시키고자하는 의지를 보이게 될 것이다.¹³⁾ Amerman, Eisenberg, & Weisman (1985: 169)도 사례관리 실천을 위한 예비 연구에서,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개입의 한 필요 부분으로서 의도적인 상담 관계(purposeful counseling relationship) 형성을 원했다고 보고했다.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형성, 클라이언트의 자아 지지, 사정, 진단 등의 임상 기술을 통합한 상호과정 없다면 사례관리의 목표가 달성되기 어렵다(Greene, 1992: 14). 많은 다른 학자들도 사례관리는 연결자(broker)와 치료자의 역할 모두를 절묘히 섞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Johnson & Rubin, 1983: 49; Tolliver et al., 1986).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탈북자의 사회·심리 적응 지원을 위한 종합형 사례관리 모형은 전체적으로 보아 하나의 통일된 틀 안에서 상호 보완하는 세 개의 기능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그림 2> 참조).

1. 도입 부분

이 부분은 일반적 개별사업 실천 과정의 초기 단계로서 탈북자를 처음 만나서 감정이입적 대

13) 서울역 노숙자 틈에서 발견된 한 탈북자(29세)는 남한 입국후 공무원으로 취직이 되었으나 정신적 안정을 상실한 이후 6개월만에 직장을 그만두고 방황을 시작해 2년만에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한다. 그간 그는 호소할 곳도 없었고 남한 사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확답도 없었으며, 많은 것을 몰랐고, 많은 것을 잃었다고 했다(KBS 2, 1999. 1.28).

<그림 2> 탈북자의 사회·심리 적응 지원 서비스 모형



화를 통해 친화적 관계(rapport)를 형성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단계이다. 심리적, 신체적 이완을 유도하며 탈북자가 진술하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듣는 과정이다. 이때 탈북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긍정적 관심(positive regard)을 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탈북자의 문제와 그 문제로 인해 야기된 감정 상태를 탈북자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탈북자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제시된 문제들 중에서 가장 시급히 개입해야 할 문제를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부터는 탈북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 이 부분의 마지막 단계는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 대한 사정 및 진단을 실시하는 일이다. 즉, 문제의 주변 상황 및 여건들을 조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종류의 개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사회적 적응, 즉, 소속된 사회에서 개인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서적 불안정 상태를 감소시키기 위한 개입은 다음의 다섯 가지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질 수 있다(Berlin, 1982: 218). (1) 주변 상황(situations)(기회 발굴, 지지 획득, 장벽 회피 등); (2) 건설적인 방향으로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actions); (3) 개인이 갖고 있는 믿음 체계(beliefs)(현실 인식 능력의 향상, 현실 검증(reality test), 기본 가정의 수정); (4) 감정 상태(emotions)(주변 환경을 어떻게 경험하고 수용하며,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 (5) 기술(skills)(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 상황에 적절한 실용지식의 향상 등). 따라서, 개입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하나는 탈북자 개인이 갖고 있는 믿음 체계 및 감정 상태, 문제 해결 기술에 대한 개인 치료적 개입이고 다른 하나는 탈북자의 주변 상황 속에서의 서비스 자원 발굴, 개발, 연결, 권의옹호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일반 사례관리적 서비스 부분이다. 파악된 문제의 성격에 따라 이 두 방향 중 한 방향으로 개입이 진행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향은 독립된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이다. 즉, 서비스 제공자는 치료부분을 진행하며 사례관리 부분의 활동 내용 계획을 탐색하고, 반대로 사례관리를 실시하면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어 두 부분을 왕래하며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종류의 서비스는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다는 시간적으로는 동시에, 공간적으로는 중복, 반복되어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2. 개별 치료 부분

이것은 탈북자를 대상으로한 개별적, 심층적 상담 및 치료 부분이다. 사회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담·치료적 개입 모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사회사업 실천은 여러 가지 개입 모델들의 실천 원리, 실천 방법, 실천 기술 등을 숙지한 후 개입해야 할 문제 성격에 가장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일선 거주지에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천할 사회복지사들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탈북자의 공통적 문제 상황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여 그것에 기반을 두고 실천해 가면서 부족

한 부분은 자문이나 의뢰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연구자는 탈북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회·심리적 문제들에 우선적으로 개입하기에 가장 적절한 실천 모델은 인지·행동 치료 기법이라고 보았다. 인지·행동적 모델은 개인과 개인의 환경 모두에 초점을 두면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즉, 인지·행동(또는, 인지·학습) 이론은 개인과 환경 사이의 호상적 영향이 대개 정보의 교환을 통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개인이 환경으로부터 방출되는 정보 신호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그것들을 잘못 해석한다면, 그 개인은 사회 환경 가운데서 맞게되는 각종 문제들에 잘 대처할 수 없다(Berlin, 1982: 218). 이 관점은 물론 환경이 방출하는 정보 신호들이 때로는 애매모호하거나 가혹스럽거나, 당혹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한 개인의 사회 행동 또는 사회적 반응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적 특성(믿음 체계, 주의력, 의지력, 사회 기술, 의지 등)과 상황의 속성 사이의 상호작용 결과라는 것이다(Bandura, 1977; Berlin, 1980: 537-555; Meichenbaum, 1977). 또한, 인지체계는 과거 및 현재 환경의 투입물(input information)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환경에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들을 선택함으로써 환경을 형성하기도 한다(Meichenbaum & Butler, 1980: 29-33). 이러한 인지·행동적 접근에 기초해서 탈북자의 사회·심리적 적응 현상에 개입할 경우 개입의 대상은 탈북자 자신들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의 인식 체계 및 사고 체계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환경에게까지 확대된다. 그리고 이것은 탈북자 입장에서건 탈북자의 사회 환경인 남한 주민들 사이의 입장에서건 모두 상호 작용 현상이다.

인지치료 기법의 기본 전제는 대부분의 사회적, 행동적 부기능은 개인이 자기 자신, 타인, 그리고 삶의 상황들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인지 체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인지 체계란 자아 개념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저장된 인식의 틀, 지식, 기대, 희망, 의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Reid, 1977: 45). 인지 체계는 또한 사건이나 사물로부터 취하는 개별적 의미이기도 한데, 이러한 의미란, (1) 각자의 자화상이나 자아 존중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 (2)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자신의 역할 및 가치에 대한 정의; (3) 자신의 신념이나 희망, 책임감 등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는 개념; (4) 현재의 일들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신념, 희망, 책임감 등을 사용하는 방향 등과 관련되어 있다(Goldstein, 1984: 179). 사회적, 행동적, 또는 감정적 부기능 상태의 해결은 인지구조의 재구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개별사회사업에 이 기법을 적용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인지 재구성 전략은, (1) 외부 세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잘못된 개념, 비현실적 기대 및 잘못된 생각들을 변화시킴; (2)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합리적 서술을 수정; (3) 문제해결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의 배양; (4) 자기 통제 및 자기 관리 능력의 함양 등이다(Fisher, 1981: 199-207). 탈북자들에 대한 적용에 있어 이러한 인식 체계 수정 노력들은 탈북자 개인의 일방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탈북자와 상호 작용하는 상

대방이 보내는 정보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실시된다.

인지 구조 재구성 전략으로 인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되는 문제 분야는 인간 관계에 대한 왜곡된 인식, 자기와 타인, 그리고 삶 전반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비합리적 불안, 공포, 우울증, 분노 및 기타 충동 조절상의 어려움 등이다(Werner, 1986). 최근에는 실직자의 구직 활동을 촉진시키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Proudfoot et al., 1997).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지 치료 전략은 탈북자들의 각종 심리, 사회적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남한 사회와 전혀 다른 북한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갖고 있었던 사회의 전반적 현상에 대한 전제나 가정, 기대들을 남한 사회에 적용시키려 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주변 상황에서 전해오는 정보의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주변 상황 입장에서 탈북자들이 보내오는 정보에 대한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탈북자의 올바르게 신속한 사회적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탈북자들과 그들과 상호 작용하는 남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인식의 틀을 점검하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실천 절차들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Hepworth & Larsen (1993: 423-433)이 제시한 다음의 다섯 단계 개입 절차를 택했다.

(1)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자신이 갖고 있는 가정, 믿음 등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에 대한 감정 및 행동 반응들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설명한다.

(2) 문제 속에 내재하는 부기능적 믿음, 사고 체계, 인식 체계 등을 찾아내도록 돕는다. 자기가 자신에게 하는 대화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합리적인지를 평가하도록 도와준다. 잘못된 인식 체계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와 탈북자는 탈북자가 갖고 있는 인식 및 사고 체계가 어떻게 잘못되었으며 그것을 변화시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충분히 토의하고 의견을 함께 해야 한다. 주변 환경이 보내는 정보가 현실적으로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탈북자가 그것을 다르게 인식하도록 강요해서는 곤란하다. 분명히 잘못된 믿음 체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가 그것의 비합리성을 깨닫지 못하고 고집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토의를 거쳐 그 믿음 체계에 인내를 갖고 도전해야 한다.

(3) 부기능적 인식과 사고를 유발하는 사건 상황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한, 그래서 감정이 상했던 구체적인 장소, 관련된 주요 인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상황에 진입하기 전, 진입하는 순간, 진입한 후로 나누어 묘사하도록 한다. 상황기록장을 활용하여 문제 상황, 상황 속에서 자기가 받은 정보의 내용, 상황에서의 생각, 그 생각의 합리성 정도를 스스로 평가하게 한다.

(4) 자기 파괴적 인식 체계를 순기능적 자기 구술(self-statements)로 바꾸도록 사회복지사가 모델링(modeling)을 통해 도와준다. 이 과정에는 예전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갖게 되는 갈등, 불안 등으로 내키지 않아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Modeling을 제

공한 후 그것을 따라서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진행한다. 처음에는 상황에 진입하기 전의 상황에서 자기 구슬 변화 연습을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소화되었을 때 '상황 진입 중' 및 '상황 진입 후'의 단계로 이전해 간다.

(5) 성공적인 변화 노력에 대해 스스로를 칭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한 후 시범을 보여 준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조그마한 진전이 있을 때마다, 칭찬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긍정적 강화를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6) 변화의 지속을 위해 과제 내주기

상담·치료 과정에서의 변화가 지속되지 않으면 결국 치료의 효과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실 생활 속에서 변화된 인지 체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탈북자의 일상 생활 속에서 사회·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구슬을 관찰 기록하고 부기능적인 요소가 있으면 순기능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실천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과제를 내준다.

(7) 평가

인지 체계나 사고 체계가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갖게 되었는가를 평가하는 단계다. 앞서 스트레스를 유발했던 상황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개입 전과 개입 후에 부기능적 사고의 빈도, 강도, 지속 시기 등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를 평가한다.

3. 일반 사례관리 실천 부분

사례관리는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빠짐없이, 중복 없이 지지적, 비용 효과적,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공받도록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 망 내에서의 논리적 절차들인 동시에 상호 작용의 과정이다(Weil et al, 1985: 2). 분열된 서비스 체계 내에서는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적절한 서비스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서비스의 지속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사례관리 체계를 통해 개별화된, 조정된 서비스가 한 장소에서 통합적으로 책임 있게 교통정리 된다. 사례관리에는 개인, 가족 집단 등의 복지를 위해 개인의 변화(직접 실천), 환경의 변화(간접 실천), 또는 모두의 변화를 기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으며 서비스 전달의 폭을 넓히기 위해 사례관리자는 연결자(broker), 옹호자(advocate), 협상자(negotiator)로서의 기술 등을 활용한다(Greene, 1992: 12; Roberts-DeGennaro, 1987: 466).

사례관리 실천방법의 핵심적 기능은 사례관리자가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 시설, 단체 및 비공식 복지 지원 체계 등의 단편화된 서비스 목록을 작성하고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그 기관의 서비스 제공을 요청, 조정하며 전체적인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 여부를 총점검하는 책임 서비스의

구현이다. 또한, 갖가지 제약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가진 클라이언트가 다양한 서비스 체계와 협상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적합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점검한다. 이를 위해서, 사례관리자는 개별서비스 제공 기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적 물적 복지 자원, 자원봉사 조직망, 자원봉사 인력(자원) 상황 및 서비스, 정부의 정책 등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위해 계획하고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탈북자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들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선적으로 민간 자원봉사 조직망, 종교기관, 민간 독지가들을 연결하면서 취업 분야 상담 및 알선(이금순, 1997: 74-76), 주거지 알선, 생활보호 사업과의 연결, 기타 지역사회의 자원 발굴 및 연결, 권익옹호 등 전반적 생활의 안정을 위한 책임 있고 지속적인 서비스 관리 및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 이탈주민은 앞서 살펴본 대로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지지해주던 경제적, 사회적 지지 기반을 모두 상실한 채 남한에서의 삶을 시작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 질 때까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들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피하면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확인되어야 할 것은 전통적인 사회사업의 가치(자기결정의 원리,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상호 책임 등)가 사례관리의 바탕을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일반적 사례관리의 실천 절차에 따른 기능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Vourlekis & Greene, 1992: 17-23; Roberts-DeGennaro, 1993: 107-109).¹⁴⁾

(1) 서비스 욕구의 정리 및 장점 사정

탈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욕구 내용과 정도를 파악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동원될 수 있는 탈북자의 장점을 파악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2) 서비스 계획 및 자원망의 개발

중복 욕구가 발견될 경우 욕구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서비스의 목적을 설정한다. 이 목적에 대해서 사례관리자와 탈북자 사이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합의된 목적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자원을 찾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맞게되는 선택의 문제 및 기타 서비스 활용상 어려움에 대해 감정 이입적 반응과 함께 경청하고 함께 해결을 모색한다. 이 과정에서 의존적 관계가 영속되지 않도록

14) 처음의 두 단계 (클라이언트 확인 및 발굴, 사정 및 진단)는 앞서 제시한 도입 부분과 중복됨으로 생략하였다. 여기서는 사정 및 진단 후 치료 서비스 외에 필요한 일반적 사례관리 서비스와 관계된 부분만을 제시한다.

록 탈북자가 담당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하고 기록한다. 앞서 확인된 탈북자의 장점(의지력, 동기 등)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신뢰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의사소통의 길을 항상 열어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자원망의 개발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와 같이 공공 기금에 의한 서비스가 발달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복지관의 서비스를 비롯, 종교단체, 자선단체, 개인 독지가 등 지역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민간 자원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3) 클라이언트를 필요 서비스와 연결

서비스 계획의 이행 과정으로서 탈북자를 그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연결해 준다.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다른 적격 요건과 탈북자가 갖고 있는 장점을 고려하여 연결한다.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서비스 체계의 경직성, 분열성,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시설의 잘못된 사용 등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사례관리자와 탈북자가 함께 노력한다. 탈북자로 하여금 서비스를 획득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가능한 모든 것을 사례관리자가 담당하도록 한다(예: 사회적 지지망 구성, 전화 걸기, 타 기관의 방문 등). 이 과정에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 탈북자의 내부 및 주변에 자체 역량이 형성되도록 도모하는 것이다. 그래야 탈북자의 독립성이 극대화되고 지속적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극소화될 것이다.

(4) 서비스 수행 상태의 점검(monitoring) 및 조절

계획된 서비스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되는가를 점검한다. 서비스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은 앞서 합의된 목적 및 목표의 내용에 기초한다. 어떤 서비스가 언제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여러 가지의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연속성과 상호보완성이 충족되도록 서비스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탈북자는 물론 서비스 제공자와 지속적 접촉을 통해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탈북자 사이의 갈등 또는 서비스 제공자들간의 갈등이 존재하는가를 점검한다. 또, 가능하다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중에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를 형성, 증진함과 동시에 자연스런 피드백(feedback)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ubin, 1987: 212-217).

(5) 서비스 확보를 위한 옹호 활동(advocacy)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부당한 일이 포착되었을 경우, 공정하고 적절한 서비스 수준의 확보를 위해 탈북자와 함께 탈북자를 위해 활동한다. 탈북자는 대개의 경우 취약하고 의존적인 상태에 있으므로 탈북자를 대변하고 탈북자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집단화하여 요구를 표출시키는 집단 활동을 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탈북자의 주거지 확보를 위해 탈북자를 대신하여 관련 담당자를 접촉하는 일, 어떤 기관의 규정을 유연성 있게 적용해 탈북자로 하여금 특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 결정권자를 설득시키는 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탈북자가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찾을 수 있도록 권능을 부여하는 일(empowerment)과도 연관된다. 힘없는 탈

복자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서비스 또는 직업에서 소외되는 것을 묵과한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위해 존재하는 사회복지사의 존재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6) 평가

이것은 사례관리자의 서비스 중개, 조정, 협상, 옹호 등의 활동이 탈북자에게,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리고 정책수립자에게 유용한 것이었나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가장 중심적인 것은 탈북자가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받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사례관리자는, ① 탈북자가 사례관리자의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② 각 서비스 제공자는 적절한 형태와 수준의 서비스를 탈북자에게 제공했는가? ③ 탈북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그 서비스가 의도한 효과를 초래했나? ④ 한정된 서비스 자원이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히 전달되었는가? 등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4. 종결 평가 및 사후 점검

앞의 개별치료 부분과 일반 사례관리 실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탈북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심리적으로 적응하여 스스로 독립된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면 사례를 종결한다. 사례를 종결한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점검(follow-up)을 실시한다.

V. 프로그램의 실천 적용 내용 및 결과

이 연구를 위해 접촉한 11명의 탈북자 중 개입의 필요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 탈북자 2명을 택하여 앞서 제시된 프로그램을 실천 적용하였다. 이들은 부부 사이였고 거의 동일한 문제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사례로 취급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되어 2 사례를 통합하여 한 사례로 진행하였다. 이 부부는 주거지 정착 후 2년이 지나지 않아 담당 경관들의 보호 하에 있었기 때문에 연구자와의 면담이 무한정 실시될 수는 없었다. 연구를 위해 관계 당국에 접촉허가 요청 시 일정 횟수 이내에서 면담을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총 면담 횟수는 5회였다. 면담은 탈북자의 거주지에서 이루어 졌다. 남편과 부인 모두 40대 초반였고 1997년 말에 남한에 입국하였다.¹⁵⁾ 현재 둘 다 직업은 없으며 자녀들을 두고 있다. 자신의 주택을 아직 배정 받지 못해 20평 정도의 가건물(방 2, 부엌, 거실, 화장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남한내에 친척이나 친지가

15) 상담 치료에 대한 비밀 보장을 위해 이름을 밝히는 대신 '남편'과 '부인'으로 표시하였다. 나이와 기타 수치도 대략만을 밝힌다.

전혀 없었다. 건강에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였다.

도입 부분에서 연구자는 부부의 심적, 신체적 이완을 유도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상호 편안한 분위기가 형성된 후 실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절차를 설명하였다. 설명에 대한 수긍이 있는 후 남한 내 정착 이후 겪고 있는 사회·심리적 적응상의 문제를 청취하였다. 부부가 하는 말에 비판이나 수정이나 부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최대한 인정하면서 들어주었다. 부부가 제시한 문제는 여러 가지 였으나 가장 우선적인 해결을 원하는 것은 주택과 직업 문제였다.

주택과 직업 문제는 자원과 관련된 문제로서 일반 사례관리적 서비스 부분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었으나 부부가 주택 요건에 대한 요구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비현실적인 기대와 인지·사고 체계가 감지되어¹⁶⁾ 연구자는 부부의 일반적 생각과 감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하였다. 부부의 사고 특성을 간단히 표현하면, 남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차별하고 멸시하며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른 감정은 서운함, 분개, 실망 및 절망 등이었다. 특히, 주택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부부의 생각이 큰 불만과 서운함을 야기하였고 이것이 다른 부분에서의 불만으로 확산, 증폭되어 부부는 직업을 구하는 일을 비롯한 여타 서비스 욕구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주택 요건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뇌졸중으로 입원까지 하였다 한다. 이러한 신체 상태가 직업 선택의 영역을 좁게 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우선적으로 남한 사회에서의 주택 상황 및 요건에 대해 부부가 부정확하게 갖고 있는 생각을 수정해 주어야 면담 및 치료가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서울시 및 그 근교의 주택 상황에 대한 전반적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주택에 대한 과대한 기대와 집착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하지만, 주택 문제와 직업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직업과 관련하여, 현재는 부부 모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부인은 식당에서 일도 하고 있었다. 현재 담당 경관이 임대 주택을 알아보고 있는 단계였으며 직업을 찾는 일은 건강과 관련하여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요하였다. 하지만, 앞서 밝힌 대로 연구자와 탈북자 사이에 허락된 면담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부부를 위해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로 치료적 개입을 시도하였다. 먼저, 인지사고 체계 재구성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였다. 인지·사고 체계의 재구성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연구자가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였으나 부부가 초반에는 수긍하지 않았고 그 논리에 대해 탐탁해하지 않았다. 부부가 인지·사고 체계의 재구성 원리와 논리에 수긍을 한 뒤 부정적 인지·사고 체계를 찾아 내는 일에 착수했다. 부부로 하여금 부정적 인지 체계와 관련된 사건 및 상황, 그 상황에서의 감정 상태, 그 감정의 강도, 자신에게 한 말(생각), 그 생각의

16) 지방자치 단체에서 15평 정도의 임대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으나 빈곳이 아직 없다고 했다. 부부는 15평의 임대 아파트는 자리가 나도 가지 않겠다고 하며 30평 정도의 아파트를 원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임대 아파트에 대한 많은 편견을 표출하였다. 주택 가격에 대한 개념도 없었다.

합리성 등을 기록하게 하였다. 그 후 확인된 각 사건 및 상황에 처했을 때 바람직한 자신의 합리적 생각, 자신에게 하는 말을 생각해내도록 하였다. 각 단계마다 연구자가 다른 상황의 예를 들어 시범을 보여주었다. 부부가 연구자의 요구를 받아 들여 성공적으로 과업을 수행했을 때마다 칭찬을 하였다. 면담 횟수의 제한으로 인하여 실제 상황에서 연습하고 확인 할 수 있는 기회는 갖지 못했다. 하지만,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자신들이 생각해 낸, 합리적 생각 및 자신에게 하는 말을 시행하겠다는 부부의 의지와 자신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힘든 상황을 만날 경우 연구자와 함께 해본 절차를 따라 혼자서 시행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실시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도표로 정리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인지·사고 체계 점검 및 변화 과정의 예시

사건/상황	감정 상태 (정도 1-10점)	인지·사고 내용 (합리성: 1-10점)	합리·타당한 사고
1 근처 시장에 씨앗을 사려고 갔다가 무시의 모욕을 당했는데 그것에 대해 이야기(항의)하면 경찰 허가없이 시장에 간 사실이 신고될까봐 그냥 참았다.	이 사회에 대해 억울함과 서운함이 복받쳤다(10). 말할 수 없는 많은 서글픈 감정과 느낌이 솟았다(10).	이 사회에 정착될 때까지 아무 생각 말고 열심히 모든 측면에서 건디고 살아가자(4).	경찰의 보호망을 허가 없이 벗어난 것은 잘못이다. 부당한 대접을 받았을 때의 서운함을 화내지 말고 씨앗 장사에게 알려야 했다.
2 나를 ○○역까지 데려다주던 남한 친구가 음주 운전으로 구속됐다. 구속된 음주자의 선처를 부탁하기 위해 경찰서에 갔으나 그분을 만나보지도 못했으며 부탁이 아무 소용없었다.	분하고 답답했다(10).	"이 세상은 의리도 없이 살아야 하는구나"(7).	음주 운전자를 구속한 것은 운전자는 물론 동승한 분의 안전을 위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에 의한 조치이다. 선처를 들어주는 것과 의리와는 별개의 문제다. 역까지 데려다준 분은 의리 있는 분이지만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
3 교회 선교관에서 탈북자를 위한 선교회가 있었다. 북한식 순대를 먹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하여 교인들이 "이것도 사람이 먹는 것인가?"라고 하였다.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었다.	민족의 넋을 잃을 정도의 느낌을 받았다(8). "야, 저거" 하고 죽여버릴 생각까지 하였다(10).	다시 한번 이해하고 참고 견디자(3). 그들도 교인들이고 나 자신도 예수 장로교의 한 교인이니 참자(3).	사람들 중에는 어디든 예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섞여있다. 그 사람의 말이 교인 전체의 의견이 아니고 남한 사람 전체의 의견은 더욱 아니다. 음식에 대한 순간적인 생각이었지 탈북자 개인을 경멸하고자 한 말은 아니었다.

<표 1> 계속

	사건/상황	감정 상태 (정도:1-10점)	인지·사고 내용 (합리성: 1-10점)	합리·타당한 사고
4	경찰에 보고없이 상가 다방에 나갔다가 발견되어 문책당함.	당황하였다(5). 이 사회가 답답하였다(8).	이 사회는 인권도 없고 권리도 없구나(10). 모든 것을 참고 견디자(8). 어려움을 자초하였다(5).	경찰의 보호는 불편한 것이 사실이지만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5	식당에서 일한 로임을 받지 못했다. 경관이 식당주인에게 전화를 해주었다. 식당주인은 5일 일했는데 4일치를 주면서도 아주 시끄러운 말을 많이 했으나 그것에 대해 나는 아무말도 못했다.	억울하다(10). 말하기가 두렵다(10). 그 사람이 교회에서 신경 쓰인다(7).	5일치 돈을 용당주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10). 말하면 기분나빠할 것이고, 서로 만나 인사하는 사이인데 알력관계가 생길 것이며, 앞으로 직업선택하는데 지장이 될 것이다(10).	5일 일했는데 왜 4일치만 주었는지 이유를 물어봐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4일치를 주고 나쁜 말까지 하는 주인이라면 당장 힘들더라도 그만 두어야 한다. 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6	우리가 한국까지 오는 길에도 음을 주신 분들이 집을 방문하면 경찰들이 꼭 참례하면서 많은 충들이 생겼다.	참 한심스럽다(7).	북한같으면 오신 손님이 갈 때 바래다 드리는데 이 사회는 이런 사회구나(3)	이 사회에서도 배운한 다. 특수한 상황 속에서 당분간의 불편이다.
7	딸이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 항상 그 애가 먼저 찾아온다. 어느날 전화가 왔다. 그 애가 먼저 찾아와서 딸을 데리고 나갔는데 그 애 집에서는 딸을 욕하면서 혼내겠다고 했다. 그 집 애가 내 딸을 데리고 나갔다고 말하고 싶었으나 못했다.	억울하다(10). 속상한다(10).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인간대접을 못받고 차별받는 느낌이 든다(10).	북한에서 갓 온 사람인데 하고 싶은 말을 다하면 안 된다(7). 사실대로 말하면 기분 나빠할 것이다(3). 정확한 말을 해야한다(10).	말을 해야한다. 아이의 친구를 가려서 사귀게 하는 것은 탈북자의 아이라서라기 보다는 남한 사람끼리도 그런일이 있다.
8	담당 경관이 교회 집사님 집에서 북한에서 온 사람을 도와주지 말라고 하면서 도와주면 일할 생각을 안한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경찰이기 때문에 말을 못했다.	마음이 아팠다(10).	정당하게 나의 신념과 입장을 밝혀야 했다(10). 경찰에게 정당한 이야기 하면 불이익이 돌아올지도 모르니 참자(7).	갓난 아이가 걸을 수 있을 때까지만 도와 주면 잘 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9	식당에서 일 할 때 함께 일하던 남한 여자들이 내가 북한에서 온 사실을 알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 외에 그들의 일까지, 심지어 자기들이 밥먹은 그릇까지 나더러 치우라고 했다. 화가 나지만 참았다.	당장 일을 그만두고 싶었다(9). 화가 났다(10). 당장 그만두려는 생각을 했으나 목사님이 소개해준 식당이었고, 따라서, 교회에서 알선해준 집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생각에 접이났다(10).	-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말을 해도 기분나빠하면서 싸움을 하자고 대들 것이며 그러면 나는 당황할 것이다(8). 그 여자들에게 당당하게 말을 해야한다(10).	그 여자들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한 대가로 하루 임금을 받는 것이니 자신들의 일은 자신이 하도록 이야기 해야한다. 목사님도 이 사실을 아시면 함께 일하는 그 여자들을 나무랄 것이다.

<표 1>에 제시된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탈북자들이 주거지에서의 보호기간 주로 접촉하는 사람인 경관과의 갈등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음으로 이웃 주민, 교회 신도, 시장 사람, 직장 동료 등과의 갈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변과의 상호작용 가운데서 일어나는 갈등은 일면 탈북자의 자격지심에서 오는 것도 있으나 많은 부분이 탈북자 주변의 남한 사람들의 배려 없는 행동과 언어에서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지·사고 체계의 변화, 수정 작업은 탈북자만을 대상으로 행해져서는 곤란하고 주변 생활인들에 대한 개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개별 치료적 개입은 탈북자만을 대상으로 한 모델의 한 부분이라기 보다는 일반 사례관리적 서비스 부문의 권익옹호 부분과 상호작용 하면서 주변 남한인 들에 대한 개입이 실시되는 부분이다. <그림 2>에서 일반 사례관리적 개입 부분과 개별 치료적 개입 부분 사이의 쌍 방향 화살표는 이러한 상호보완적 활동을 의미한다.

일반 사례관리적 관점에서의 활동은 면담 횟수의 제한으로 인하여 서비스 활동이 모두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루어진 부분까지만 소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 방향을 제시해보았다. 먼저, 일반 사례관리적 욕구를 정리해본 결과 주택, 취업 문제의 해결 외에 보호 경관과의 갈등 문제 해결, 동장과의 면담 희망, 생활 상 접촉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수정 등의 욕구가 확인되었다. 부부의 장점으로 파악된 것은 적극성과 활달함이었다. 주택에 대한 욕구가 강렬하여 주택의 사정을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임대 주택의 여분이 나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현재는 임시 주거지가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살펴볼 수 있는 문제였다. 당장 11평이나 15평, 17평의 임대 주택이 나와도 앞서 밝혔듯이 그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을 것이므로 당분간 개별 치료적 개입을 통해 남한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취업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으나 남편과 부인 모두 건강상의 이유로 아무일이나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건강상의 문제도 일 부분 주택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혈압 상승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개별 치료적 개입이 실시되면서 정서적 안정을 찾으면 선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었다. 특히, 부인은 강연이나 강의를 원하고 있어 정서적 안정에 이은 건강 회복이 이루어지면 추진해 볼 만한 일로 보여진다. 경관과의 갈등이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었다. 거주지에서의 경찰의 보호는 분명 탈북자의 신변 안전을 위해 법률이 규정한 필요한 행위이므로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부 경관들의 경우 탈북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격이나 인권에 대한 배려 없이 임무를 수행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 면에서 경관의 신변 보호 업무를 전제할 사회복지사의 활동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음으로 동장과의 면담은 사실 실질적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본다. 따라서, 담당 사회복지사의 주선 하에 간단한 만남을 주선해주는 것이 탈북자의 정신적 안정감 회복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현재는 각 거주지에 많은 숫자의 탈북자가 살고 있지 않으므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 주변 생활인들의 행동 수정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하지만, <표 1>의

사건/상황 5와 같은 경우엔 사회복지사가 개입하여 권익옹호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탈북자의 원만한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남한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나타내 주는 부분이다.

VI. 연구의 제한점 및 모형 활용 방안

제시된 모형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보다 많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본 모형을 실천해 보았어야 했다. 하지만, 앞서서도 밝힌 탈북자가 처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심리·사회적 적응상 문제점을 갖고 있는 탈북자들만을 일정 기간에 다수 확보하여 모형을 실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였다. 그 결과, 많은 사례를 발굴, 적용해 보지 못하고 단일 사례(부부)만을 적용해 보았다. 따라서, 모형의 유용성에 대한 확정적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후속 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한 사례에 대한 모형 적용 내용을 질적으로 심도 있게 살펴보는 과정에서 모형의 유용성이 충분히 부각되었다고 본다. 또한 탈북자에 대한 서비스 모형이 없는 현실에서 서비스의 절차 및 내용을 하나의 실천 모형으로 제시하고 실천해 보임으로써 사회복지사가 어떤 상황에서 탈북자를 접하든 당황하지 않고 상담해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프로그램은 실천 원리 및 실천 방법이 단순하고 절차화 되어 있어 정착 지원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거주지 보호기간동안 지역사회 내에서 실천을 담당할 지역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 전문요원들, 또는 민간단체나 종교기관의 탈북자 대상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쉽게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실천모형은 정부 운영의 정착지원시설(1년), 거주지에 진입하여 2년간 정부의 보호·지원을 받는 동안(법 제5조 3항), 그리고 그 후 지역사회 내에 자립하여 거주하는 동안 어느 단계, 어느 장소에서도 실용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우선은 탈북자가 주거지에 정착한 후 지역중심의 탈북주민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이금순, 1997: 77), 지역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나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탈북자들이 주거 상황 현실에 노출된 후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대량의 탈북사태가 발생할 경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실천 행동의 안내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로서는 사회복지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중 누구라도 모델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지만,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민감성 및 중요성을 고려해 전담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선적으로 각 지역단

위로 설치되어 있는 종합사회복지관내 전문사회복지사들 중 한 명에게 탈북자에 대한 사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담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이금순, 1997: 77). 주거지 보호기간 중에 탈북자의 사회·심리적 적응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탈북자가 사회·심리적으로 안착할 때까지 탈북자와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어 보다 세밀하고 전문적인 실천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실천을 위해서 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관에 일정한 재정 보조를 하여 사회복지사의 실천을 유도하고 사회복지사의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민간자원 또는 개인 독지가들이 발굴되면 점차 민간자원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VII. 맺음말

탈북자들의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좋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탈북 주민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한다. 이들을 우리 생활 주변에서 우리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이웃 내지는 친구로서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가 정립될 때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사회적응 및 심리 안정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혈연, 지연, 학연으로 꼭 짜여진 사회 속에서 하나의 연도 없이 헤쳐나가야 하는 약자 위에 군림하여 이용하려 든다면 민족의 통일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간의 사회통합도 요원할 것이다.

이 보다 더 시급한 것은 사회안전망을 하루 속히 구축하는 것이다. 최근의 실업자 문제에서 보듯, 우리는 탈북자는 고사하고 내부 국민의 생활을 보호해주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통일된 독일에서 탈 동독자들이 단시일 내에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가고 있는 것은 그들의 사회보장 제도가 튼튼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 제도가 허술한 우리 상황에서 탈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탓만 하고 있을 수도 없다. 이 땅에 의지할 만한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될 때까지는 각종 민간 단체가 탈북자들을 위해 국가의 역할을 대신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 누군가는 탈북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어야 탈북자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명세. 1996. "탈북자의 사회적응은 민족화합의 예비과정". 이영선, 전우택 편. 탈북자의 삶-문제와 대책.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제2권, pp. 92-105.
- 박영호. 1994. 통일이후 국민통합방안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신율. 1997. "북한탈출주민의 사회적응에 대한 고찰 - 동독 탈출 주민의 사회적응 문제의 고찰을 통한 북한 탈출 주민의 사회적응 대책 개선을 위한 소고". 통일연구. 제2권, pp. 219-240.
- 오혜정. 1995. "귀순 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윤덕룡, 강태규. 1997. "탈북자의 실업과 빈부격차에 의한 갈등 - 탈북자들의 경제문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발표자료.
- 윤병익. 1997.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실상과 정책과제". 북한이탈주민 한국 사회 적응에 관한 정책세미나 자료. pp. 27-33. 남북사회문화연구소.
- 이금순, 송정호. 1997.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교육방안". 통일연구논총. 6(1). pp. 71-94.
- 이금순. 1997. "탈북자의 사회적응 대책 및 그 문제점". 통일. 189. pp. 68-77.
- 이만식. 1996. "북한출신 남한이주자의 국내 적응력 향상을 위한 통합적 지원모델 개발".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 제2권. pp. 1-37.
- "[이영일 의원] "탈북자 계층 빈부격차 남까지 이어져". 조선일보. 1998년 10월 19일. 전자판.
- 이장호. 1997. "북한출신(탈북자 포함)심리 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 성공논총. 제28집 4권. pp. 739-766.
- 이종훈. 1996. "남한이주 북한동포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정비방향". 현안분석. 제119호. pp. 1-28.
- 전우택, 민성길. 1996. "탈북자들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이영선, 전우택 편. 탈북자의 삶-문제와 대책. 서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제2권. pp. 16-60.
- "탈북자 그후". KBS 2 추적60분, 1999년 1월 27일.
- "[탈북주민들] '남한사회 적응 어렵다' 호소". 조선일보. 1998년 11월 28일. 전자판.
- 통일부 인도지원국. 1998. "1997회계년도 통일부 국회 결산심사 주요 검토자료".
- 통일원. 1997. 국정감사자료.
- 황성철. 1995. "사례관리(Case Management) 실천을 위한 모형개발과 한국적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27권. pp. 275-304.

- 황진수. 1998.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지원방안". 사회복지분과위원회 제12차 회의자료.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ew York: Prentice Hall.
- Berlin, S. 1980. "A Cognitive Learning Perspective for Social Work." *Social Service Review*. 4. December. pp. 537-555.
- Berlin, S. B. 1982. "Cognitive Behavioral Interven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27(2). May. pp. 218-226.
- Fisher, J. 1981. "The social work revolution." *Social Work*. 26(3). pp. 199-207.
- Fisher, K. 1987. "Case Management." *Quarterly Review Bulletin*. 13(8). pp. 287-90.
- Goldstein, H. ed. 1984. *Creative change: A cognitive-humanistic approach to social work practice*. New York: Tavistock.
- Greene, R. R. 1992. "Case Management: An Arena for Social Work Practice." In *Social Work Case Management*. edited by Betsy S. Vourlekis & Roberta R. Greene. New York: ALDINE DE GRUYTER. pp. 11-25.
- Hepworth, D. H., and J. A. Larsen. 1993. *Direct social work practice*. Pacific Grove, CA: Brooks/Cole Publishing Co.
- Meichenbaum, D. 1977. *Cognitive Behavior Modification: An Integrative Approach*. New York: Plenum Press.
- Meichenbaum, D. and L. Butler. 1980. "Egocentrism and Evidence: Making Piaget Kosher." In *Psychotherapy Process: Current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edited by Michael J. Mahoney. New York: Plenum Press. pp. 29-33.
- Proudfoot, J., D. Guest, J. Carson, G. Dunn and J. Gray. 1997. "Effect of cognitive-behavioural training on job-finding among long-term unemployed people." *The Lancet*. 350(9071). pp. 96-101.
- Reid, W. J. 1977. *The task-centered practi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 Roberts-DeGennaro, M. 1987. "Developing Case Management as a Practice Model." *Social Casework*, 69. pp. 466-469.
- Roberts-DeGennaro, M. 1993: "Generalist Model of Case Management Practice." *Journal of Case Management*. 2(3). pp. 102-113.
- Rubin, A. 1987. "Case Management." In *Encyclopedia of Social Work*. edited by A. Minahan et al. Silver Spring, MD: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pp. 212-222.
- Vourlekis, B. S. 1992. "The Policy and Professional Context of Case Management Practice." In

Social Work Case Management. edited by Betsy S. Vourlekis & Roberta R. Greene. New York: ALDINE DE GRUYTER. pp. 1-9.

Weil, M., J. M. Karls and Associates. 1985. *Case Management in Human Service Practice.* San Francisco: Jossey-Bass.

Abstract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Comprehensive Case Management Model for Helping North Korean Refugees' Psycho-Social Adjustment in South Korea

Um, Myung Yong

This study aimed to present a comprehensive case management model which might be helpful for social workers in community social welfare agencies who works with North Korean refugees for their psychosocial adjustment in South Korea. After being constructed, the model was put into practice upon North Korean refugees. This article described the whole process of model construction and its application. Detail steps taken in this research include: (a) The researcher had 20 unstructured individual interviews with 11 North Korean refugees in order to identify psychosocial problems that need social workers' intervention; (b) Based upon the problems identified through interviews and previous literature review, program components were identified and sorted out into two phases, one of which is therapeutic phase, the other is case management phase; (c) By interlocking the two phases, the researcher proposed a comprehensive case management model whereby North Korean refugees can get psychosocial services as well as linkage services in an interactive fashion; (d) The utility of the proposed model was examined by using a couple of North Korean refugees who initially showed complicated psycho-socio-economic problems. The therapeutic phase employed a cognitive-behavioral approach. The case management phase consists of: assessment and diagnosis; service planning and resource identification; linking of clients to needed services; monitoring of service delivery; and evaluation. Although the program could not go through with because of the limited contacts with North Korean refugees for security reasons, the program was turned out to be very useful in helping North Korean refugees' settling-down in South Korea. Implica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proposed model was discussed along with limitations of this study.

전화번호: (02) 760-0636

Fax (02) 760-0630

E-mail: myum@skku.ac.kr

Hitel: myum